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7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70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5 선고 2022가단51778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창호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2. 1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5. 선고 2022가단5177809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채권이 연체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책임재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무자력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피고는 C의 채무 존재나 연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발생 이후인 2018. 3. 21.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그 이전인 2017. 10. 20.과 2018. 1. 5.에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고(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채권양도도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될 뿐 이행기에 이를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참조)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없어,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 또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 채권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양도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던 2018. 3. 21.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② 충주시 Q연립주택 R호 철근콘크리트조 61.47㎡(이하 '이 사건 Q 연립'이라 한다)의 1/2 지분, ③ 충주시 S연립주택 T호 철근콘크리트조 83.61㎡(이하 '이 사건 S 연립'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였다. C은 201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22,000,000원에, 이 사건 Q 연립의 1/2 지분을 3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S 연립은 2018. 3. 21. 당시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8. 3. 22. 주식회사 U에 9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C은 2018. 3. 21. ① V조합에 합계 21,590,000원 이상의 채무를, ② W에 9,606,000원 이상의 채무를, ③ X에 2,295,000원 이상의 채무를, ④ 원고에게 22,393,226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Q 연립의 1/2 지분을 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그 거래 당사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하여 체결된 점, ②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Q 연립 외에도 피고와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한 바 있어 특별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2018년 3월경부터 피고에게 공유하던 부동산들의 본인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동일한 동기와 기회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나) 이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있기 전 C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지분의 가액 22,000,000원, ② 이 사건 Q 연립의 1/2 지분 가액 35,000,000원, ③ 이 사건 S 연립의 가액 38,000,000원(= 매매가액 90,000,000원 -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합계 95,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합계 55,884,226원¹⁾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이후에는 C의 적극재산으로 가액 38,000,000원의 이 사건 S 연립만이 남아 있었고, 소극재산은 변동 없이 55,884,226원 이상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으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통틀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Q 연립의 지분을 매도하여 이를 처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이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C은 위 부동산들 외에도 피고와 공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들을 모두 피고에게 매도한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Q 연립의 매각 이후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S 연립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바로 다음날인 2018. 3. 22. 매각된 점, ④ 이후 C은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2) 피고가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하여 여러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여 온 사실, C은 2018년 3월경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자기 지분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의 지분을 단기간 내에 일괄 처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바, 피고가 C이 단기간에 자신의 지분을 일괄 처분함에 있어 C과 통모하였거나 적어도 C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황들에 반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이 선의라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2. 9. Y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갑 제5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 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32,937,463원 이상이고, 이는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2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2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김혜경 사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8. 3. 21. 체결한 매매계약은 2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액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선의중

판사정덕수

판사윤재남

별지

1) V조합에 대한 채무 21,590,000원 + W에 대한 채무 9,606,000원 + X에 대한 채무
2,295,000원 + 원고에 대한 채무 22,393,226원